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93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박용갑·한준호·정준호

복기왕 • 조승래 • 박정현

장철민 · 조인철 · 황명선

확정아 • 한민수 • 박희승

황 희 · 손명수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는 비상 계엄 사태가 직후인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조사됨.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 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

출이 급감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전통시장사용분"을 각각 "전통시장등사용분"으로 한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등사용분" 이라 한다) × 100분의 50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 | |
|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 |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
|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 | | | |
|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 | |
|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 | | | |
|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 | | | |
| 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 | | |
|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 | | | |
| 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 | <u>2</u> | | |
| <u>025년 12월 31일</u> 까지 재화나 | 028년 12월 31일 | | |
|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 | | |
| 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 | | | |
| 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 | | | |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 | | |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 | | |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 | | |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 | | | |
| 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 | | | |
| 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 | | | |
| 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 | | | |
| 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 | | | |
| 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 |

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4. (생 략)

-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

| 1. ~ 4. (현행과 같음)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등 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50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명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기한제1호·제2호 및 제4호의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경우에는 100분의 50)

- 2. · 3. (생 략)
-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u>전</u> 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

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 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 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 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의 금액의 합계액

-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
 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
 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 2. 3. (현행과 같음)

| 4. | | | |
|----|--------|---|----------|
| - | | | |
| - | | | <u>전</u> |
| | 통시장등사용 | 분 | |

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 0

-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 7. (생략)
- ③ ~ ⑩ (생 략)

| 전통시장 |
|-------------------------------|
| <u> 등사용분</u> |
| |
| |
| |
| |
| 5 |
| <u>전통시장등사용분</u> |
| |
| |
| |
| |
| |
| |
| |
| |
| |
| 6.·7.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간음) |